
Policy and Law Report _Vol.13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4.18.~ 2022.04.24) -

April 2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u>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 확대 방안 논의</u>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 -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에 맞추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사용하는 전해질에 따라 알칼라인(AEC), 고분자 전해질(PEMEC), 음이온교환막(AEMEC), 고체산화물(SOEC) 수전해 등으로 구분 ② 참석 기업 -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 요청 * 해외는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	2022-04-21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전략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혁신의료기기* 육성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구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한 제품 중 20개 제품**을 4월 중 전략적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임 *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모바일 앱, 가상·증강현실 등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기술 혁신성,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산업적 가치 등이 우수한 제품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의료기기 지정 관련 제출 자료 자문 ②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험설계 및 자원 공유 ③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문 ④ 혁신기술 연구정보 제공 ⑤ 허가·심사 종합 지원 등이 있음	2022-04-18
조달청	•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 -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 ②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1년 기준으로 당초 4,35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낮아져 1,755억 원의 보증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2022-04-20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22.4.20. 시행)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을 수행하는 데이터거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 이에 따라,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절차, 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운영, 데이터거래사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제2조 및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확정하도록 함 ②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운영 (제12조 및 제1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④ 데이터거래사 등록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함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을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및 데이터 거래 관련 법·제도 교육 등으로 정함 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2022-04-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4.20. 시행) 산업구조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을 지원하고,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50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 이에 따라, 산업환경 전환에 필요한 설비자금의 지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요건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환경 전환에 필요한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3조의3 신설) - 저탄소·친환경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이나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 요건 등 (제19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 전환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④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29조 및 별표) - 재제조 제품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각각 정함	2022-04-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4.20. 시행)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등의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자가 대기업 등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 * 보편적 의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말함 이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재제출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대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의2 신설) -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43조 및 별표 4의2 신설) - 하루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하루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③ 자료 제출 등을 거부·기피한 대기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1 제2호허목 및 구목 신설) - 현재 자료 등 제출명령을 거부·기피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에 대한 제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2022-04-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4.20. 시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②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③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 (제33조의2 신설)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제36조 및 제37조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2022-04-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4.19. 시행)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경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명확화 (제9조제5항 신설) -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보험업의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업 허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임 ② 보험회사 경영업무 범위 확대 (제16조제2항제9호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 특별계정 운용 규제 완화 (제56조제1항) -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가 그 특별계정을 통해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 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계정을 운용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④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 기한 조정 (제87조제2항)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기한을 참조순보험요율의 시행예정일 '9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늦춰 참조순보험요율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참조순보험요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에 총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정할 때 참조하기 위한 요율로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보험요율 (「보험업법」 제1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⑤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결원 시 충원 기간의 연장 (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 -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하는 법인의 지점·사무소의 상근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2022-04-1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공포, 12. 30. 시행)에서 위임하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의 심의를 위해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 서류 목록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서류 신설 (안 시행규칙 별표1에 제4호 신설) ②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개정 (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의견 제시기간 : 4/20(수)~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로 제출	2022-04-20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 함 (안 비고2 신설) -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 (안 적용례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4/19(화)~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대기관리과)로 제출	2022-04-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수입검사 실시 및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물성 식품 수입 위생평가 도입 (안 제11조) -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함유한 식품에 대하여는 축산물과 달리 수출국 관리현황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수입되고 있어, 제외국 관리현황 고려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수입 전 단계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 ②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 -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수입에 따른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4시간·365일 수입신고 처리에 따른 수입자 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서류검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③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3부터 안 제25조의6) - 해외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전문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등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명확화 (안 제38조) -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식품생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기반구축을 통해 국내식품의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⑤ 수입식품 관리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개선 등 제도 정비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입식품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5조, 제7조, 제15조)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여 수입신고 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 정비 (안 제20조) ※ 의견 제시기간 : 4/20(수)~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	2022-04-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 (안 제6조의2) -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의3) -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4/19(화)~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	2022-04-1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파생상품 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제10호 삭제 등)	2022-04-1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0인)」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임.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임대료, 할인판매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	2022-04-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6항)	2022-04-18
	• 「<u>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u>」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고, 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함에 있어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이 과도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자체적인 지급보증계약을 담보로 보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유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3 신설)	2022-04-1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2022-04-1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15조)	2022-04-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외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의11 신설)	2022-04-1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로 지정한 '공기열'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로 정의되지 않아 급격히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며, 2030년까지 기준 총배출량 대비 40%라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EU와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부과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 등을 통한 간접 수출 규모도 상당한 만큼 탄소중립에 취약한 수출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될 수 있어 공장 건물 냉난방 효율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공기열 방식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시점임 또한 건물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냉난방 목적의 소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이외 다른 에너지원 도입은 미미하여 국내 NDC 목표 달성 중 건물부문이 가장 미흡한 실정으로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2022-04-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신에너지인 수소와 연료전지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며, 연료전지는 LNG 등을 사용하여 운전비 또한 과도하여 경제성이 떨어짐. 재생에너지로 주로 활용되는 태양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으며, 풍력과 수력은 초기 구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발전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음 또한 지열은 보통 지하 150m 이상을 천공하여 지중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성적계수(COP)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십 개의 천공 공사가 필요하여 지반침하, 환경파괴, 인접 건물로 피해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다양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EU는 2009년부터 지열, 수열과 더불어 공기열을 모두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로 지정, 관련 기술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지열 외에 공기열, 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음 공기열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건축물 내 열 에너지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어 지역과 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공기열의 COP 효율에 상관없이 건물 냉난방용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함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출력제약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전력 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안민석의원 등 13인)</u>」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산업임.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화 등 산업사회의 큰 변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정부도 AI와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정부가 수립한 'K-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육성을 첫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방향은 대학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소극적인 방안임 따라서 특수법인인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 변경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②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의 조직을 두도록 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2022-04-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④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⑤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⑥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의 설립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29조) ⑦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부칙 제3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4/29(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6호 발간	
국회도서관	4/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발간 -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	
	4/19(화)	「현안, 외국에선?」 제34호 발간 -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예산정책처	4/27(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4월호 발간 -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산업·무역, 고용·인구, 가계소득·부동산시장·금융시장 동향 분석	
입법조사처	4/27(수) 07:30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신냉전 시대, 새로운 안보의 길을 찾다	
미래연구원	4/25(월)	「국제전략 Foresight」 제8호 발간 -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별첨1] 제395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사청문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4/25(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4/26(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계속)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재위	5/2(월)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외통위	4/25(월) 14:00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5/2(월)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5/4(수)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국방위	4/28(목)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행안위	4/28(목)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문체위	4/25(월) 09:30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29(금)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복지위	4/26(화) 10:00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등
	4/26(화) 13:30	제2법안소위	- 법안 심사
	4/27(수) 10:00	제1법안소위	- 법안 심사
	5/4(수)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국토위	4/25(월) 10:30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국토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등
	5/2(월)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미정 (2022. 4. 25 현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5(월) 09:30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5(월) 14:00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5(월) 14:00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 차기정부 '항우청' 구상을 중심으로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25(월) 14: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6(화) 14:00	(글로벌 OTT의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	이상현,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7(수) 10:00	(전문가에게 듣는다) 대한민국 대전망 - 한국경제와 대전망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2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5호 발간	
국회도서관	4/19(화)	「현안입법 알리기」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4/21(목)	「최신정책정보:국내」 -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등	
입법조사처	4/18(월)	「NABO Focus」 제43호 발간 - 주요국의 탄소가격제도 동향 및 시사점	
	4/22(금)	「NABO Focus」 제44호 발간 -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8(월) 14:00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권은희, 오기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20(수) 10:00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소속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